

도기영

법무법인 국민 대표변호사

☎ 02-470-8812

viplawyer@hanmail.net

www.kookminlaw.com



〈필자약력〉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법학과 수료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형사조정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 강동구상공회 이사
- 성남시 치과의사회 고문변호사
- 고려대학교 국제공익법률상담소 자문위원
- 국민대학교 법률상담센터 협력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면책지원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심사위원회 간사,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
- 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서울중랑경찰서 보안협력위원

CASE 1

공해소송에 있어서 증명책임의 분배 (대법원 2003다2123 판결)

1. 사실관계

가. 원고들은 재첩양식을 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로부터, 1986년 12월 6일 여천시 소라면 대포리에 위치하고 있는 대포조류지 중 493,750m²에 관하여 1996년 12월 5일까지 10년간 패류양식면허를 받고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위 대포조류지는 피고들이 운영하고 있는 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여천공업단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km정도, 광양만에 있는 광양제철소로부터는 12km정도 떨어져 있고, 이에 유입되는 하천으로는 해산천, 소라천, 신풍천, 신풍배수로, 대포배수로, 쌍봉천, 주삼천 등이 있다.

다. 한편, 위 대포조류지는 인근 농경지와 주택의

농약 및 생활하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어서 전라남도지사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패류양식을 허가하면서 농약유입과 수위저하 등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어업권자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단서를 명시하였고, 원고들이 여천농지개량조합장과 사이에 대포조류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농약유입 등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그 피해보상요구가 불가능하다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양식장에서 재첩양식을 하였으나, 1988년부터 수확량이 점차 감소하자 1991년부터는 아예 종파를 살포하지 아니하였다.

마. 이 사건 양식장들이 위치한 광양만은 반폐쇄성 만으로 묘도 등 10여개의 섬이 산재해 있고, 1일 2회의 조석주기에 따라 남북으로 왕복성 조류가 흐르고 있으며, 양식장 인근해역의 수심은 약 5m 정도이다.

바. 여천공단은 정부의 중화학공업육성계획의 일환으로 광양만에 인접한 여천군 일대에 조성된 대규모의 석유화학공업 임해공업단지로서, 1967년도에 단지가 조성된 이래 매년 입주업체가 증가하고 있고(1980년도에 대부분의 업체가 입주를 마쳐, 이 사건 양식장이 허가될 무렵인 1988년도에는 총 68개 업체가, 이 사건 양식장이 폐장될 무렵인 1991년도에는 78개 업체가 가동하고 있었다), 그밖에 광양만 북쪽해안에는 광양제철소와 그 연판단지가 위치하고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위 대포조류지에 인접한 여천공단에서 피고들이 운영하는 공장들은 석유화학과 관련된 공장들로써 폐물과 같은 유해성 물질을 대량으로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자체처리한 후 여천공단 내 하천을 통하여 광양만 해역으로 방류한 결과 폐물 등의 유해성 물질로 광양만의 해수가 오염되었고,

오염된 해수가 대포조류지 내 이 사건 양식장으로 유입됨에 따라 1988년부터 재첩수확량이 점차 감소하였으며 1991년에는 양식장을 폐쇄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이 연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피고들의 공장가동행위와 재첩수확량의 감소 및 폐사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3.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재첩 양식장 등 광양만 일대의 재첩 양식장에 피해가 발생한 1988년경 피고들 공장이 위치한 여천 공단의 폐수로 인하여 광양만의 수질이 재첩의 양식에 부적당할 정도로 오염되었으며, 오염된 광양만의 해수가 배수갑문을 통하여 이 사건 재첩 양식장이 위치한 대포 조류지 내로 유입된 사실, 그리고 육상에서 대포조류지로 유입되는 하천으로 인한 오염원인 하천유역의 인구나 가축의 수가 종전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재첩 양식장의 피해는 피고들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로 오염된 광양만의 해수가 대포조류지로 유입되어 발생하였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 공장의 폐수 배출과 이 사건 재첩 양식의 피해와의 인과관계는 일응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반증으로 자신들이 배출한 폐수 중에 이 사건 재첩 양식장의 피해를 발생시킨 원인물질이 들어 있지 않거나 원인물질이 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재첩 양식에 피해를 일으킬 정도의 농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또는 이 사건 재첩 양식장의 피해는 전적으로 다른 원인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어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는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고리를 모두 자연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곤란 내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가해기업은 기술적·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원인조사가 용이할 뿐 아니라 자신이 배출하는 물질이 유해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사회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가해기업이 배출한 어떤 물질이 피해 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 무해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이 사회 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

이 사건은 여천공단 내 공장들의 폐수 배출과 재첩 양식장에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일응 증명되었으므로, 위 공장들이 반증으로 그 폐수 중에 재첩 양식장에 피해를 발생시킨 원인물질이 들어 있지 않거나 원인물질이 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재첩 양식에 피해를 일으킬 정도의 농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또는 재첩 양식장의 피해가 전적으로 다른 원인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1심과 2심 법원은 가뭄과 수온상승 등도 피해의 원인이라고 하며 마을주민의 폐소판결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환경피해에 대한 원인 규명의 책임은 피해자보다 경제적, 기술적으로 우월한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폐늘이 피해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기업이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을 져야한다"고 하며 피해자인 마을주민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즉, 가해자 측에서 배출 물질의 무해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해발생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사건의 판결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조한 것으로 앞으로 발생할 환경오염 사건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